

명예교수에 관한 규정

제정 2013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과 본 대학 직제규정에 의거하여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명예교수의 자격, 추대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대학의 명예교수 추대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자격)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본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교수로서 재직 중 본 대학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2. 학술분야 등 특정분야의 업적이 뚜렷한 자이거나 본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또한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4조(임기) 명예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.

제5조(추대절차) ① 총장이 명예교수를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② 명예교수의 추대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교육 및 활동에 관한 공적서
2. 명예교수 추대위원회의 의견서
3. 본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서
4.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6조(처우) ① 명예교수는 본 대학의 제의식에 있어서 본 대학의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.

② 명예교수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하여 특별강의 또는 연구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)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 대하여 그 전공분야의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금액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8조(추대) 명예교수로 추대된 자에게는 추대장을 수여한다.

제9조(명예교수 추대의 취소)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추대의 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